

NEWSLETTER

March 2021

지식재산권 그룹
Intellectual Property Group

CONTACT



변호사 김운호

T: 02.772.4695
E: unho.kim@leeko.com



변호사 오충진

T: 02.772.4910
E: choongjin.oh@leeko.com



변호사 이은우

T: 02.772.4334
E: eunwoo.lee@leeko.com



변호사 곽재우

T: 02.772.4985
E: jaewoo.kwak@leeko.com

저작권 분야 주요 승소 사례

... 카카오페이지 웹툰 사건 및 구름빵 사건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최근 저작권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중 ‘카카오페이지 웹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및 ‘구름빵 동화책 저작권 귀속 사건’은 해당 업계의 저작권 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므로, 소개 드립니다.

I. 웹툰의 불법 복제·배포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합582748 판결)

1.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무료로 웹툰이 무단 게재된 사안

A회사 운영자들은 웹툰기업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웹툰 4901편 26만 785회차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A회사 사이트에 복제·배포 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A회사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수익금을 취득하였으며, 방문자수를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이 즐겨보는 웹툰을 A회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무료로 게시한 것입니다.

A회사에 게시된 각 웹툰 회차의 무단 이용자의 구독자수나 A회사 자체의 매출이 존재하지 않아 웹툰기업들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카카오페이지를 대리하여 A G회사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청구금액인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합582748 판결).

2. 무료 제공 웹툰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과정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변론 과정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웹툰의 이용 현황에 관한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이 A회사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참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변론을 함으로써, 무료로 웹툰이 무단 이용된 본 건에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유통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웹툰 1회차를 열람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3.54개의 페이지를 거쳐가는 점, ② 해당기간 동안 A회사의 페이지뷰(page view)수를 이용자들이 웹툰 1회차를 열람하기 위해 거치는 페이지 수인 3.54로 나누면 A회사에 게시된 웹툰에 대한 총 열람 횟수를 산정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게시된 웹툰 회차의 개수로 나누면 한 웹툰의 회차당 평균 열람횟수가 2,545회로 산정되는 점, ③ 동일 사용자가 동일 회차를 반복하여 열람하는 등의 보정을 고려하더라도 웹툰의 회차당 열람횟수는 적어도 200회 이상인 점, ④ 웹툰 1회차는 2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어린이닷컴에 무단으로 게시된 카카오페이지의 웹툰 회차의 수 x 회차별 평균 열람횟수 200회 x 회차당 이용료 200원’으로 산정하여, 10억원의 손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하여 창작자와 웹툰 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침해자가 웹툰 불법복제를 수단으로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서 향후 웹툰 저작물에 대하여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판결도 적극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구름뽕’ 동화책 저작권 귀속에 관한 판결

1. 작가와 출판사 간의 구름뽕 저작권에 관한 귀속 분쟁

작가 원고 A는 2003. 9.경 광장의 고객인 출판사 B사와 그림책 시리즈인 ‘복스복스 플러스’ 그림책 1권을 개발하고 해당 그림책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B사에게 양도하며, B사로부터 일정 금액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후 동화 ‘구름뽕’ 작품을 완성하여 B사에게 제출하였고, B사는 타사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구름뽕’ 작품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등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름뽕’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창작된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2차적저작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후,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구름뽕’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원고 A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B사 등을 상대로 ‘구름뽕’ 작품의 캐릭터 및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출판사 B사를 대리하여 ‘구름뽕’ 작품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B사에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한 결과**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7가합588605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나2007820 판결)에서 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작가의 상고로 이어진 대법원(2020다217816)에서도 2020. 6. 25.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2. 저작권 양도 효력에 대한 다툼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는 피고 B사 등을 상대로 ① 이 사건 계약 해지, ② ‘구름뽕’ 캐릭터 저작권 침해, ③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2심에 이르러서는 ④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약관규제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이 사건 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 문언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캐릭터를 포함한 ‘구름뽕’ 저작물 일체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출판사에게 양도된 이상, 피고들에게 캐릭터 저작권 내지

저작권인격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저작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출판사와 작가 사이에 적절히 분담하려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고 A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법무법인(유)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이 사건에서 창작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출판물을 발간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설비, 인력 등을 투자하고 성공에 대한 초기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출판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구름빵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계약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제도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창작 및 제작, 수익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고 깊이 있는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